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사업』 협약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2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바,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참여기관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번호 : 2020-데이터-위136
- 과제명 : 분야20번 진료 및 진단 AI데이터 구축
- 협약당사자 및 책임자:
 -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이 시 육 교수
 - 참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장 성 호 교수
 - 단장 : 하 성 규
- 협약기간 : 2020. 10. 31. ~ 2021. 2. 28.
- 협약금액 : 459,675,000원
 - 정부출연금 : 450,000,000원
 - 민간부담금 : 9,675,000원 (현물: 9,675,000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상기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등”(“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을 통칭하여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 별임 1의 특약 조건을 포함하여 이하 동일하다.)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거하여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르며,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과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하 “사업비 기준”이라 한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이하 “연구 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를 준용할 수 있다. 별임 1의 특약조건에서도 동일하다.

제3조(사업내용 및 수행) ① 이 협약사업에 관한 세부 사업내용은 ‘별임 2. 사업수행계획서’와 같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및 청렴의무) 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등”은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 등”은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사업 협약 기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사업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등”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약 체결 후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은 본 협약 특약 조건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 등”에게 지급한다.
② “수행기관 등”은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체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자체부담금 중 현금을 협약 체결 즉시 사업비 관리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1차 사업비 청구 시 자체부담금 입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기관 등”이 출자하는 현물은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 등”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규정 및 사업비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 등”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개별기관(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별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 등”은 사업비를 전용하여야 할 경우 “수행기관 등”的 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 등”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사용 잔액과 사업기간 및 종료 후 발생한 이자수입을 “전문기관”이 요청한 기간 내에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 등”은 사업비 내에 편성된 예산 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 등”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등”은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리지침을 따르며, 관리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리규정, 사업비 기준, 연구 관리규정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④ “수행기관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해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결과보고) “수행기관 등”은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상호협조) ① “수행기관 등”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사업내용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수행기관 등”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 등”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0조(사업수행 및 보안조치) “수행기관 등”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규정 제16조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약 등) 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등”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관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민간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수행기관 등”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중 실제로 본 과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문기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미 지급한 사업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유·무형적 발생품(시설·기자재,

시제품 등)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권리 · 의무의 양도 제한) “수행기관 등”은 “전문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관계자료 제출 등) “수행기관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추진현황, 관계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등) ① “수행기관 등”은 이 협약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관리규정, 사업비 기준, 연구 관리규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11조에 의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④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해당 연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해당 연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해당 기금운용 ·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만일 “수행기관 등”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수행기관 등”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관리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 “수행기관 등”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전문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제재 조치) “전문기관”은 제12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15조에 따른 관계법령 위반, 기타 귀책사유 등에 따라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지침 제44조에 따라 관련 “수행기관 등”의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수행기관 등”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계법령의 내용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 수행기관장은 참여기관장과 위탁기관장에게 관계법령을 준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 대응 지침 등) ① 공공 사업현장에서 “수행기관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은 본 협약에 의한 사업수행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협약기간 연장은 승인사항으로 본다.
③ 일시정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협약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협약금액의 조정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협약금액을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서 보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는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 붙임 : 1. 특약조건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2020년 10월 26일

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기관장 : 김 용 진
연구책임자: 이 시 육 교수

참여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여기관장 : 하 성 규
연구책임자 : 장 성 호 교수